

제24-6차(긴급6차 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4년도 6차(긴급6차 통합)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회의일시 : 2024. 12. 20.(금) 13:30
- 회의장소 :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406호
-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| 안전수 | 원안 가결 | 수정 가결 | 심의 보류 | 부결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11건 | 5건 | 3건 | 3건 | - |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| 일반의결안건 | | | | | 보고안건 |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---|
| 안전수 | 원안 가결 | 수정 가결 | 심의 보류 | 부결 | 안전수 | 원안 접수 |
| 1건 | 1건 | - | - | - | 3건 | 3건 |

- 붙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 2. 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2024. 12. 20.

| |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위원장 | 한국전력거래소 | 정동희 (불참) |
| 위원 | 한국전력거래소 | 옥기열 (위원장 직무대행) |
| | 산업통상자원부 | 김남혁 |
| | 단국대학교 | 조홍종 |
| | 건국대학교 | 노재형 |
| | 법무법인광장 | 조영재 |
| | 한국전력공사 | 오홍복 (대리참석) |
| | 한국중부발전 | 김광일 (대리참석) |
| | 포스코인터내셔널 | 김권종 |
| 간사 | 한국전력거래소 | 안병진 |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| | |
|--|--|
| 안건명 :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근거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 | 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1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전력거래소 |
| 제안내용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참고) 본 규칙개정안은 '24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('24.9.20.)에서 원안가결된 건'의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 후 재심의를 요청하는 건임</p> <p>* 「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근거 및 계통안정성 평가 검토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」</p> <p>○ 제24-4차 규칙위 이후 관련 상위 고시*의 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, 고시 개정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재상정</p> <p>* 「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65호)」</p> <p>① (운영방안 수립근거 명확화)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계통운영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검토기준 및 근거 명확화</p> <p>○ “전력계통 운영방안” 용어 정의 신설 ☞ 제1.1.2조 150호</p> <p>○ 계통운영자의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기준 및 근거 명확화 ☞ 제5.8.2조, 제20.8조</p> <p>② (기타) 전력계통 운영기준에 관한 문구 정비</p> <p>○ 345kV 간선계통의 단일고장 운영기준 신설 ☞ [별표3] 3.4.1</p> <p>○ 345kV 간선계통의 이중고장 운영기준 변경 ☞ [별표3] 3.4.2</p> |
| 주요 토의내용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p>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</p> <p>- '24년 제4차 「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근거 및 계통안정성 평가 검토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」 심의 결과는 본 건 개정안 심의결과로 대체함</p> |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정 동 희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기준 변경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2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전력거래소 |

| 제안내용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정산기준 개정 | ☞ | [별표2] V. 1. 대상자원 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|--|-------|--|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| | ○ 정산기준의 예측오차율 수준을 현행 대비 약 2%p 강화 - 단, 풍력*의 경우 최근 오차율 실적을 고려하여 시행 유예(1년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현행</th> <th colspan="2">개정(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예측오차율</td> <td>6%이하</td> <td>6 ~ 8%이하</td> <td>→ 4%이하</td> <td>4 ~ 6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산단가</td> <td>4원/kWh</td> <td>3원/kWh</td> <td>4원/kWh</td> <td>3원/kWh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현행 | | 개정(안) | | 예측오차율 | 6%이하 | 6 ~ 8%이하 | → 4%이하 | 4 ~ 6%이하 | 정산단가 | 4원/kWh | 3원/kWh | 4원/kWh | 3원/kWh | | | | | | |
| | 구분 | 현행 | | 개정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예측오차율 | 6%이하 | 6 ~ 8%이하 | → 4%이하 | 4 ~ 6%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정산단가 | 4원/kWh | 3원/kWh | 4원/kWh | 3원/kWh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* 풍력이 포함(개별, 집합, 혼합자원)된 경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예측량 변경 제출 확대 | ☞ | 제14.4.1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현행</th> <th colspan="4">개정(안)</th> </tr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 <th>차수</th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 colspan="2">1차</th> <th colspan="2">2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출마감</td> <td>10시 (필수)</td> <td>17시 (필수)</td> <td>→ 10시 (필수)</td> <td>14시 (선택)</td> <td>17시 (필수)</td> <td>20시 (선택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현행 | | 개정(안) | | | | 차수 | 1차 | 2차 | 1차 | | 2차 | | 제출마감 | 10시 (필수) | 17시 (필수) | → 10시 (필수) | 14시 (선택) | 17시 (필수) | 20시 (선택) |
| 구분 | 현행 | | 개정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차수 | 1차 | 2차 | 1차 | | 2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제출마감 | 10시 (필수) | 17시 (필수) | → 10시 (필수) | 14시 (선택) | 17시 (필수) | 20시 (선택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기타 기준 변경 및 문구 명확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<p>① (평가예외 신청기간 변경)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여 급전지시에 따르는 경우, 예측량 평가예외 신청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 확대 ☞ 제14.1.3조</p> <p>② (문구 명확화) 예측제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문구 수정 ☞ 제14.2.1조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
| 주요 토의내용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회의결과 : 원안가결 | | <p>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</p>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| | |
|---|---|
| 안건명 : 장주기BESS의 운영기준 마련 등을 위한 규칙개정(안) | 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3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전력거래소 |
| 제안내용 | <p>① (용어정의)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도입 및 계약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☞ 제15.1.1조 제10호</p> <p>② (운영기준) 계통연계시 재생E 발전량 흡수를 위한 BESS 설비 특성과 송변전 설비 보호 등을 고려한 BESS 설비 운영기준 신설 ☞ 제15.3.2조</p> <p>③ (계약양도)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양도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변경 절차 명확화를 위해 관련 기준 개정 및 자료 제출을 위한 절차와 서식 신설 ☞ 제15.2.7조 및 별지 131-1,2호</p> |
| 주요 토의내용 | <p>☐ 회의결과 : 수정가결</p> <p>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는 데 동의함</p> <p>- (제15.3.2조) BESS 운영기준의 일부 조항 수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력거래소의 BESS 운영 시 송변전 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문구 통합 <p>- (제15.2.7조) '계약서' 지칭 대상을 구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기존) 세부절차는 계약서에 따른다 → (수정) 세부절차는 <u>중앙 계약공급자와 중앙계약수요자간 체결한 전력거래 표준계약조건의 계약 양도 관련 조항에 따른다.</u> |

심의 결과 : 수정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특수일기간 수요예측 의미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4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전력거래소 |

| 제안내용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요예측 여건을 반영해 '특수일'의 수요예측에서 '특수일기간'의 수요예측으로 문구 수정 ☞ [별표5] 7.1.3.3조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기 존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 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[별표 5] 전력수요 예측 절차 7.1.3.3 특수일의 수요예측은 예년 해당일 실적치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 및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전년대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을 반영하여 예측한다.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[별표 5] 전력수요 예측 절차 7.1.3.3 <u>특수일기간의</u> 수요예측은 예년 해당일 실적치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 및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전년대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을 반영하여 예측한다.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기 존 | 개 정 | <p>[별표 5] 전력수요 예측 절차 7.1.3.3 특수일의 수요예측은 예년 해당일 실적치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 및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전년대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을 반영하여 예측한다.</p> | <p>[별표 5] 전력수요 예측 절차 7.1.3.3 <u>특수일기간의</u> 수요예측은 예년 해당일 실적치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 및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전년대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을 반영하여 예측한다.</p> |
|--|--|-----|-----|--|---|
| 기 존 | 개 정 | | | | |
| <p>[별표 5] 전력수요 예측 절차 7.1.3.3 특수일의 수요예측은 예년 해당일 실적치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 및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전년대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을 반영하여 예측한다.</p> | <p>[별표 5] 전력수요 예측 절차 7.1.3.3 <u>특수일기간의</u> 수요예측은 예년 해당일 실적치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 및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전년대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의 평일대비 수요 저감율을 반영하여 예측한다.</p> | | | | |

| | |
|---------|---|
| 주요 토의내용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p>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</p> |
|---------|---|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수급비상 시 예비력 확보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

제안번호 : 제2024-6-5호

개최일시

2024년 12월 20일 13:30

제안자

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- ① 수급경보 주의·경계단계 조치사항에 발전계약으로 개발된 발전기 출력을 공급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"발전계약 완화" 근거 조항 신설 ☞ 제5.14조
- 전력계통 안정성 및 조치의 중요도를 고려하여, 주의·경계단계 조치사항을 최대한 활용 후 심각단계 긴급 부하조정 직전 시행

< 예비력, 경보수준 및 필요 조치사항 >

| 예비력 (MW) | 경보 | (현행) 필요 조치사항 | (개정) 필요 조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3,500미만 2,500이상 | 주의 (Yellow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경보"주의"또는 "경계" 발령 • 휴전·활선작업 시행중지 및 계통 복구 지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경보"주의"또는 "경계" 발령 • 휴전·활선작업 시행중지 및 계통 복구 지시 |
| 2,500미만 1,500이상 | 경계 (Orange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요조정지원제도(긴급절전) 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요조정지원제도(긴급절전) 시행 • 발전계약 완화 |
| 1,500미만 | 심각 (Red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경보"심각" 발령 • 긴급 부하조정(부하차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경보"심각" 발령 • 긴급 부하조정(부하차단) |

- ②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내 조치사항 추가 ☞ [별표12] 7.2.2.3 12.

별표12.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

- 7.2 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예상 시 조치절차
- 7.2.2.3 『수급경보 주의(Yellow)』 경보 발령 혹은 『수급경보 경계(Orange)』 경보 발령 시
- 6. 송·배전사업자는 휴전, 활선작업을 중지하고 계통을 원상복구 한다.
- 7. 수요조정시행사업자는 수요조정지원제도(긴급절전)을 시행하며, 수요조절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.
- 11. 규칙 제12.4.3.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전력부하감축을 지시할 수 있다.
- 12. 전력거래소는 상기의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긴급부하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 운영방안에서 결정된 발전기 제약량을 완화하여 추가 공급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주요 토의내용

- ☐ 회의결과 : 원안가결
- 참석위원 대다수가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신뢰성DR 발령기준 변경 및 휴일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

제안번호 : 제2024-6-6호

| | |
|---------|--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전력거래소 |
| 제안내용 |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뢰성DR 발령기준 현실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간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예비력 기준 삭제 ○ 발령 가능성이 낮은 운영예비력 기준 상향 (4.5GW → 6.5GW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력수급비상 "관심"단계 4.5GW + 속응성자원 2GW - 속응성자원이 소진되기 전에 신뢰성DR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- 제주의 경우 현행 유지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뢰성DR 휴일 확대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등록) 기존 참여자원(표준DR, 중소형DR, 제주DR)과 별도의 휴일형 참여자원(H-표준DR, H-중소형DR, H-제주DR) 구성 ○ (운영)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(Hr-1) → 수요감축(Hr-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운영기간 / 시간) 봄(3~5월), 가을(9~11월) 및 특수경부하기간 / 휴일 10~17시 ○ (감축시험) 3월 1~2주, 9월 1~2주에 1회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재시험) 3월 3~4주, 9월 3~4주에 시행 ○ (정산)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본정산금) '04년 이전 진입 발전기 적용 RCP 지급 - (실적정산금) 감축량×MGP(감축시간대 운전한 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) ○ (페널티) 위약금 및 거래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위약금) 이행률 97% 미만 시 미이행량 2배 수준의 기본정산금 차감 - (거래제한) 이행률 80% 미만 3회(추가등록자원은 2회) 시 잔여기간 거래를 제한 |
| 주요 토의내용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수정가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는 데 동의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부칙) 제도의 종료 시기를 구체적(특정일자 지정 등)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|

심의 결과 : 수정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인건명 : 수요반응자원거래시장(DR) 기준용량가격(RCP) 적용기준 변경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: 제2024-6-7호

개최일시 2024년 12월 20일 13:30

제안자 전력거래소

(적용 RCP 변경) 기존 당해연도 RCP(기준용량가격)을
→ 개정 당해연도 전체 발전기 RCP의 설비용량 가중평균값으로 변경

| 기 존 | 개 정 |
|--|--|
| <p>제124.1.2조(고정기본정산금단가의 결정 및 공개) ② 월별 고정기본정산금단가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표준 중소형 DR 월별 고정기본정산금단가 =</p> $\sum_t^{DRT} (DRHCF_t \times FPCF_m)$ <p>DRHCF_t = RCP × RCF × TCF_t DRHCF_t :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RCP : 육지지역 기준용량가격</p> | <p>제124.1.2조(고정기본정산금단가의 결정 및 공개) ② 월별 고정기본정산금단가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표준 중소형 DR 월별 고정기본정산금단가 =</p> $\sum_t^{DRT} (DRHCF_t \times FPCF_m)$ <p>DRHCF_t = RCP × RCF × TCF_t DRHCF_t :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RCP : 육지지역 수요반응자원의 기준용량 가격(RCP)은 당해연도 전체 육지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을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.</p> |
| <p>2. 제주 DR 월별 고정기본정산금단가 =</p> $\sum_t^{DRT} (DRHCF_t \times FPCF_m)$ <p>DRHCF_t = RCP × RCF × TCF_t DRHCF_t :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RCP : 제주지역 기준용량가격</p> | <p>2. 제주 DR 월별 고정기본정산금단가 =</p> $\sum_t^{DRT} (DRHCF_t \times FPCF_m)$ <p>DRHCF_t = RCP × RCF × TCF_t DRHCF_t :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RCP : 제주지역 수요반응자원의 기준용량 가격(RCP)은 당해연도 전체 제주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을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.</p> |

(부칙) 본 개정안 최초 적용 시기 및 완화계수 적용안을 부칙에 명시

회의결과 : 심의보류

주요 토의내용

-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
- (보류 사유) DR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선행 필요
- (W/G 운영)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W/G 구성·운영 필요
- W/G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규칙개정위원회에 보고 후,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필요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계통안정화용 ESS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8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한국전력공사 |
| 제안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용어의 정의) 전력계통 신뢰도 개선과 발전계약 완화를 위해 신규 도입된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의 분류체계와 운영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1.1.2조 77의1 및 77의3 <input type="checkbox"/> (특성자료 제출)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운전에 필요한 특성자료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2.1.1.1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(발전계획 반영) 하루전 발전계획 수립시 송전계약검토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의 운전가능량 제출, 입찰서 제출사항과 전기저장장치 운영계획서 개정,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5.1.1조 제4항, 제16.3.2조 제4항, [별표9(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)] 7.1.7 제1항, 별지 제31의4, 제33의4, 제31의8, 제33의8 <input type="checkbox"/> (부칙) 입찰시스템의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의 운영계획서 제출 (입찰) 기능 추가 및 검증을 위한 개발기간 확보 사항 반영 |
| 주요 토의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 |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양수발전기 양수동력비 정산 등에 관한 규칙개정(안)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9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한국수력원자력 |
| 제안내용 | <p>① 급전지시로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동력비 정산 규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존) 거래일의 발전시간대 최저MP → (개정) 거래일의 최저MP <p>② 양수발전 정산 시 실적효율 반영을 위한 비용평가위원회 기능 및 정산식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용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 개정 ○ 양수발전 정산 시 적용하는 기존 고정효율(79.16%)을 → 개정 최근 10년 양수 평균 효율(실적)로 변경 |
| 주요 토의내용 | <p>□ 회의결과 : 심의보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 - (보류 사유) 양수 발전기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정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선행 필요 - (W/G 운영)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W/G 구성·운영 필요 · W/G 운영 결과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'25년 1분기 규칙개정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필요 |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양수발전기 용량정산금 산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(안)

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: 제2024-6-10호

개최일시 2024년 12월 20일 13:30

제안자 한국수력원자력

공급가능용량 정산 시 실효용량비율 반영을 위한 비용평가위원회 기능 및 정산식 개정

- 비용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 개정
- 공급가능용량 정산 시 실효용량비율 반영

| 기 존 | 개 정 |
|--|---|
| <p>[별표2] 정산 기준</p> <p>I.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</p> <p>2.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</p> <p>다. 양수발전기</p> <p>양수 발전기의 용량정산금(TPCP)은 다음 식에 따라 거래일 단위로 정산한다. 즉,</p> $TPCP_{i,t} = RA_{i,t} \times (HCF_{i,t} + \beta) \times ECPF_{i,t} \times 1,000$ <p>여기서,</p> <p>$ECPF_{i,t}$: 용량가격 지급 여부 표시기로서 거래시간 1시부터 8시까지는 '0', 그 외의 시간은 '1'</p> <p>$HCF_{i,t} = RCP_i \times RCF_i \times TCF_i \times PCF_i$</p> <p>$RCP_i$: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</p> <p>RCF_i : 적정 설비에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,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</p> <p>TCF_i :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</p> <p>PCF_i :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중 략></p> | <p>[별표2] 정산 기준</p> <p>I.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</p> <p>2.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</p> <p>다. 양수발전기</p> <p>양수 발전기의 용량정산금(TPCP)은 다음 식에 따라 거래일 단위로 정산한다. 즉,</p> $TPCP_{i,t} = RA_{i,t} \times EFCR_i \times (EHCF_i + \beta) \times 1,000$ <p>여기서,</p> <p>$EFCR_i$: <u>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실효용량비율</u></p> <p>$EHCF_i = RCP_i \times RCF_i \times PCF_i$</p> <p>$EHCF_i$: <u>양수발전기의 용량가격</u></p> <p>RCP_i :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</p> <p>RCF_i : 적정 설비에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,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</p> <p>PCF_i :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중 략></p> |

회의결과 : 심의보류

주요 토의내용

-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
- (보류 사유) 양수 발전기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정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선행 필요
- (W/G 운영)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W/G 구성·운영 필요
- W/G 운영 결과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'25년 1분기 규칙개정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필요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책임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6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| 제안번호 : 제2024-6-11호 |
| 개최일시 | 2024년 12월 20일 13:30 |
| 제안자 | 전력거래소 |
| 제안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용어정의) '구역전기사업자' 및 '책임공급비율' 관련 정의 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책임공급비율)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 내 전력수요에 맞춰 공급해야 하는 발전량의 비율로, 최소 70%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(자기공급책임 강화) 구역전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비처에 전력을 우선 공급토록 하고, 책임공급비율 미준수 시의 정산 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책임공급비율 설정)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70% 이상을 구역 전기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전력으로 의무 공급 ○ (전력량정산금 가산) 책임공급비율을 미준수하여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 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구간별로 정산금을 가산 <input type="checkbox"/> (역송 최소화) 구역전기사업자의 구역 내 판매가 아닌, 대규모 외부 거래 방지를 위한 역송 제한 정산 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역송 제한 비율 설정) 월간 발전량의 30%로 역송량 제한 ○ (전력량정산금 차감) 월간 발전량 대비 전력시장 판매량에 대해 30%까지는 SMP로 정산하되, 30% 초과량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전력량정산금을 차감 <input type="checkbox"/> (적용대상 명확화) 본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 허가를 받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전기 설비용량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기존 구역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료전환, 구역 변경 등 설비용량 증설과 무관한 허가는 제도 미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(계량설비 설치)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측에 전력거래용 계량기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역전기사업자는 송전용, 수전용 및 발전량 계량설비를 별도로 설치 |
| 주요 토의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수정가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는 데 동의함 - 전력량정산금의 차등 지급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|

심의 결과 : 수정가결

2024년 12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정 동 희



【붙임 2】

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| 일반의결내용 | 심의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▪ (제1호)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위원 선임(안) | ○ 원안 가결 |

| 보고내용 | 보고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▪ (제1호) 제24-5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 | ○ 원안 접수 |
| ▪ (제2호)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변경 | ○ 원안 접수 |
| ▪ (제3호) 조합별 비용제도 진행현황 | ○ 원안 접수 |